
2026년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감 사 관

2026년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6. 3. 11.[수] ~ 3. 20.[금] <8일간>
- 감사대상: 맑은물사업소[■과, ▲과, ◎과]
- 감사범위: 2023. 4. 1. ~ 2026. 3. 20
- 감사인원: 감사관 등 11명 ※(일반)시민감사관 2명 참여
- 감사분야: 기관운영 업무 전반
- 감사결과

○ 지적건수 : **총 39건** (처분요구 44건)

처분요구(건)					재정상 조치(원)			
계	징계	주의	통보	시정	계	회 수	추 급	감 액
44	1	29	4	10	138,132,035	48,555,185	168,850	89,408,000

○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자문의견 : 3건

○ 모범사례 : 3건

Ⅱ.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처분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명)
			방법	금액(원)	
		44건	8건	138,132,035	13건/45명
계	지적건수: 39건	징계 1 시정 10 통보 4 주의 29	회수 5 추급 2 감액 1	48,555,185 168,850 89,408,000	경징계 1 훈계 13 주의 31
1	수도요금 부과 부적정	통보			훈계 2
2	주무관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주의			훈계 1 주의 4
3	'보안진단의 날' 지연 운영 및 미실시	주의			
4	단가계약 작업지시에 대한 공문 시행 누락	주의			주의 6
5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정 주의	회수	355	
6	저수조 청소업자 수도시설 교육 관리 소홀	주의			
7	급수공사 신청접수 업무 소홀 관련 개선 통보	통보 주의			
8	교육훈련 운영 및 실적 관리 소홀	통보 주의			
9	○○ ○○ ○○ ○ ○○○ ○○○○ 및 지방보조 금관리업무 부당 처리	징계 주의			경징계 1 훈계 1 주의 2
10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과다지급	시정	회수	1,650,000	
11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시 불용 수도미터기 상계처 리 부적정	통보 주의			훈계 2 주의 2
12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와 1인수의계약 체결	주의			훈계 1

처분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명)
			방법	금액(원)	
13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실시 소홀	주의			
1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사항 미게재	주의			
15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조회 미실시	주의			
1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미검토 및 미공고	주의			훈계 4 주의 2
17	수의계약 배제 미실시	주의			주의 2
18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추급	29,470 6,410	
19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시정	회수 추급	1,533,360 162,440	
20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미흡	주의			
21	특별휴가(육아시간) 사용 규정 미준수	시정			
22	계약 관련 보증업무 소홀	주의			
23	지하수 사용 관련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소홀	시정			주의 1
24	신기술 특허공법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기준 부적 정 운영	주의			
25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공사 기술사용협약 미체결	주의			
2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주의			
27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	주의			

처분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명)
			방법	금액(원)	
28	공사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주의			
29	건설공사의 기술지도계약 체결 업무 소홀	주의			주의 1
30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 및 전문교육 미이수	시정			
31	안전관리 계획 미작성 및 미승인	주의			
32	분할 발주 부적정	주의			훈계 2 주의 2
33	지장물처리공(관매달기) 미시공 및 설계변경 미이행	시정	감액	89,408,000	
34	가설사무소 설치 변경 실정보고 미이행 및 우선시공	시정			주의 3
35	시설공사 공사감독 부적정	시정	회수	45,342,000	주의 6
36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37	분기별합동점검 발주청 미참석	주의			
38	공사관리관 준공검사 입회확인서 미작성	주의			
39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미발급	주의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분번호	01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통 보

제 목 수도요금 부과 부적정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만세구청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매월 수도사용자 등에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 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고, 같은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에 따르면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업종별요금표에 따르며,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또한 같은 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별구분표에 따르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업종변경을 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신고서(구비서류: 건축물대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업종별	단계별	사용량(㎥)	요금(원)
가정용		1 ~	660
일반용	1	1 ~ 100	890
	2	101 ~ 200	1,070
	3	201 ~	1,240
대중탕용		1 ~	1,055

[별표 2] 구경별 정액요금표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원)	비고
φ 15mm	1,700	
φ 20mm	4,800	
φ 25mm	7,800	
φ 32mm	13,900	
:	:	: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수도사용요금의 정당한 효율 적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 현황에 따라 적정한 수용가 업종을 적용하여야 하고, 업종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업종 변경신청 안내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후 직권으로 변경하여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기간(2026. 3. 11. ~ 3. 20.) 동안 수도요금 상수업종 적용 실태를 20**년 00월 부과내역을 표본조사¹⁾로 확인한 결과,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아래

[표 1, 2]와 같이 ○건의 경우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상수업종을 잘못 적용하여 수도요금²⁾을 과소 부과징수하였다.

이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급수공사 신청 당시 급수 용도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수도요금 적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우리시 수도요금 부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저해하였다.

[표 1] 20**년 00월 수도요금 상수업종 부적정 내역(총괄) “생략”

[표 2] 20**년 00월 수용가별 상하수도사용료 부적정 부과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화성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신축 건축물 증가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방대해진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 일부 미흡함이 있었으며, 향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철저한 업종 분류를 통해 공정한 요금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 ① 업종 요율을 착오 적용한 수도요금에 대해 적정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공정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 ②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45조(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요금 과소부과분에 대해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표본조사 방법: ① 법인등에 부과된 가정용 부과내역 약 1,200건 확인, ② 2023. 4. ~ 2025. 12. 매월 건축정책과(구 건축허가과)에서 송부한 ‘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26개 공문 확인

2) 수도요금 부과금액 = 상수도요금+구경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처분번호	02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무관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만세구청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과 등 2개 부서)에서는 20**. 00. 00. “ㄱㄱㄱ ㄱㄱㄱㄱㄱㄱ” 등 총 ○건의 문서를 주무관이 1인 결재로 처리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동 규정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결”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읍·면·동의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과 같고, 각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국장·소장·단장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 소속 직원이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위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단위사무별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맑은물사업소 ▲과와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 00. 00.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등 총 ○건의 문서를 처리하면서 주무관이 전결권자(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전결권자의 결재없이 1인 결재로 처리하였다.

[표]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주무관이 전결권자의 결재 없이 1인 결재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03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보안진단의 날’ 지연 운영 및 미 실시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월례적으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르면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 소유 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매월 보안진단의 날 실시 및 결과 제출 요구 공문을 맑은물사업소에 시달하였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는 매월 정해진 날짜(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재분류 검토 및 비밀소유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맑은물사업소 ■과, ▲과,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년부터 20**년까지 적게는 ○일 많게는 ○○일까지 총 **회(■과 *회, ▲과 *회, ◎과 *회)의 ‘보안진단의 날’을 지연 운영하였으며, ▲과는 총 1회의 ‘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보안진단의 날’ 지연 및 미실시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보안진단의 날”을 지연 운영 및 미 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04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단가계약 작업지시에 대한 공문 시행 누락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시설 유지보수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과업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작업내용, 위치, 물량 등을 지시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일부 업무는 작업지시 과정에서 공문 시행 없이 담당자가 문자(카카오톡 포함) 또는 유선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

도록 하여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9.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르면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단가계약의 작업지시를 할 경우 긴급등의 사유로 우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공문 등 공식 문서로 보완하여 작업의 내용, 위치, 물량, 시기, 승인권자 및 변경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검사·검수 및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총 *건의 단가계약에서 문자

(카카오톡 포함) 또는 유선으로 작업을 지시하고도 공문 시행을 하지 아니하여, 개별 작업의 지시 일시, 지시 내용, 위치, 수량, 승인권자 및 변경 여부 등이 공식 문서로 남지 않게 하였으며, 특히 연번 *번 *건은 작업지시 공문뿐만 아니라 관리대장이 없어 실제 수행 과업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등 검사·검수와 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계약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단가계약 작업지시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긴급 등의 사유로 우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공문 등 공식 문서로 보완하고, 실제 수행 과업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단가계약에 따른 개별 작업지시를 문자, 유선 등 비공식적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 공문 등 공식 문서로 반드시 보완하여 검사·검수 및 정산이 가능하도록 계약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05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 수	재정상 조치금액	355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정·주의요구

제 목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물품 구입 등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한 대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

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등은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계좌 검사(거래내역, 잔액 등)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운영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점검하여 사용내역과 카드사용 내역과 결제계좌 입금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 ▲과)에서는 20**. 00. 00.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출금 예정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야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연체를 발생시키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10건을 출금 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에서 최대 *일 결제계좌에 지연 입금하여 연체료(총 \$원)를 발생시켰고, 발생한 연체료를 예산으로 집행하면 아니 됨에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건, \$원)하거나, 회계 담당자 등이 부담(*건, \$원)한 사실이 있다.

[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연체 발생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건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두 건에 대해 반납 처리하고,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 ①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결제일보다 지연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예산으로 집행된 연체료(355원)를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06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저수조 청소업자 수도시설 교육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저수조 청소업자 수도시설 교육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34조에 따르면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 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각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저수조청소업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한다)은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고,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저수조청소업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한다)이 최초 교육 및 보수 교육³⁾의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육대상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개소의 저수조청소업자가 종업원, 감독자 등에 대한 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독려·촉구하지 않는 등 저수조청소업 교육이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저수조청소업 교육이수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관련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 공문을 통해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수증 등록 방법, 제출 절차, 유의사항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도법」 등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수도법 개정(2018. 6. 13.)으로 2018. 6. 13.이전 수료자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을 수료일로 적용하여 2023년 보수교육대상임.

처분번호	07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통보·주의요구

제 목 급수공사 신청접수 업무 소홀 관련 개선 통보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아래 [표]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설계 및 공사비 산정 등을 거쳐 급수공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공사 시행 및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급수공사 전반을 처리·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급수공사 신청 건수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화성시상수도급수공사규정」 제4조에 따르면 급수공사의 신청은 급수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가 시장에게 소정양식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되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하되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며,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상수도급수공사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청서상 신청일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보완하게 하고,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인의 직접 신청인지 여부와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한 후 민원을 접수·처리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급수공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청일자가 누락되거나 접수일 이전의 날짜가 기재된 경우에도 별도의 보완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접수·보관함으로써 실제 신청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20**

년부터 20**년까지 급수공사업체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일괄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위임장⁴⁾이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인의 직접 제출 여부, 업체의 단순 전달 여부 또는 적법한 위임에 따른 대리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처리함으로써 신청일 관리 및 대리인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급수공사 신청 방식이 대면 접수 외에도 팩스, 담당자 이메일, 읍·면·동 제출 후 담당자 전달 등으로 다양하여 실제 신청일과 새울 민원 접수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노령층 증가와 바쁜 사회생활로 방문 접수 및 공사비 가설계 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시민의 동의를 받아 상수도 대행업체와 연계한 현장 방문 접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20**년부터는 급수공사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을 의무화하도록 시정 조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 ① 급수공사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신청일자 누락, 접수시점 확인 곤란, 대리 제출 시 위임장 미첨부 등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급수공사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적정성 제고와 접수기록 및 처리이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도입 및 접수·처리 이력의 전산 관리 연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 20**년 급수공사 신청서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음

처분번호	08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통보·주의요구

제 목 교육훈련 운영 및 실적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교육훈련비를 상하수도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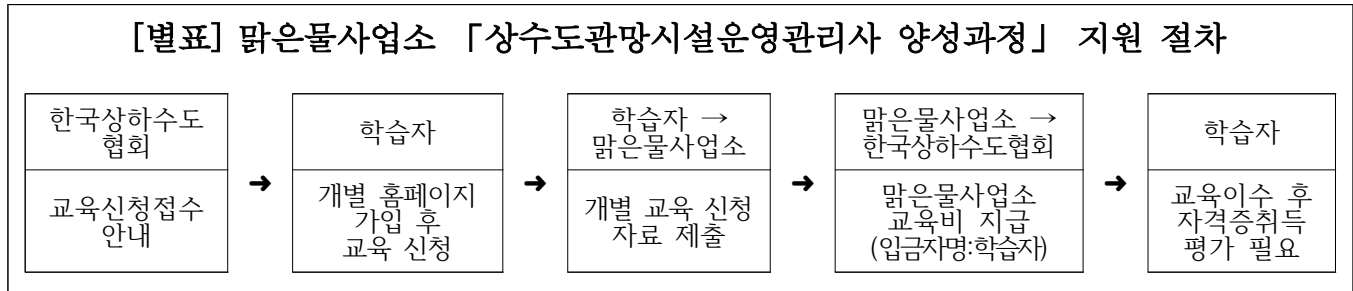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⁵⁾ 양성과정」 교육훈련비 지원 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21조제8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2 [별표 2의2]에 따른 화성시 법정 배치 인원(1급 2명·2급 2명 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2021년부터 맑은물사업소

5)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2021. 4. 1. 「수도법」 개정 및 시행령 신설을 통해 도입)
 ○ 주요 직무: 상수도관망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상수도관망의 누수 관리등
 ○ 화성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시설규모 1,500km): 1급 2명 + 2급 2명 이상
 ※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별표 2의2]

에서는 상수도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에서 운영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⁶⁾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 교육훈련비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양성과정은 1급 과정과 2급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수기준은 집체교육의 80% 이상 출석, 실무교육 수강(실무교육이 제외되는 경우 해당없음), 평가 합격으로 되어 있으며, 양성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를 응시하려면 집체교육 수료자는 수료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에도 최초 응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협회에서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집체교육 1급 및 2급 교육생 모집 공고’에 따라 매년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공고문에 따르면 모집대상으로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희망자로 일정 자격요건⁷⁾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6) 상수도관망 및 부속시설(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수도법 시행령 별표3의 2

받을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양성과정의 교육훈련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공고문의 신청방법에 따라 개인별 신청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수료 여부, 이수평가 응시 여부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실제 업무수행 가능 인력에 대한 운영수요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년 0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양성과정에 총 *건, \$원의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면서 개인별로 자격취득을 희망하여 신청한 양성과정에 대해 집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수평가 응시여부 등을 미 확인하여 [표 2]와 같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은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양성과정 교육훈련비 지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년부터 20**년까지 전체 지원대상자 *명 중 *명이 현재 퇴직하는 등 전문인력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다수 직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였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히 함으로써 교육훈련비 지원의 실효성을 저하시켰다.

[표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교육훈련비 집행 현황 “생략”

[표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 현황 “생략”

3. 교육실적 등록 및 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에 따르면 부서 서무담당자로 하여금 교육훈련 실적 확인 보조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화성시 상시학습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은 교육훈련부서(인사과)에서 교육명령을 발하거나 협조한 교육에 한하여 교육실적이 인정되고, 교육명령(협의)이 없는 중앙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은 기관주관교육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같은 지침에 따르면 교육 이수실적 입력은 교육 종료일(또는 수료일) 기준 당해연도 내 인적자원개발시스템에 교육주관 부서에서 입력하여 상시학습 이수 실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오류 및 부정 입력이 확인된 경우 즉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당해 연도 내에 인적자원개발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되,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사과 협조를 통해 실적 입력을 해야 하고, 인사과의 교육명령이 없는 기관주관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여 상시학습 이수 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등록된 실적의 중복 또는 오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시학습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맑은물사업소(■과, ▲과, ◎과)에서는 [표 3]와 같이 총 *건의 교육 이수 실적을 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 또는 기관주관교육)하지 않았으며, 교육훈련 실적 관리 소홀로 [표 4]과 같이 동일 과정이 중복 등록된 *건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감사기간 중 삭제되었다.

[표 3] 교육훈련 실적 미등록 현황 “생략”

[표 4]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현황 “생략”

4. 직무교육 미이수자 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력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하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성시 상시학습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교육 불참자 및 교육 참여 불성실자에 대하여는 1년간 모든 교육 선발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수료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화성시 상시학습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재교육 지시 및 제재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표 5]와 같이 소속 공무원 *명이 총 *건,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육을 미이수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재교육 지시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교육훈련비 지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한편, 교육 미이수자 *명 중 *명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교육훈련비를 자진반납하였다.

[표 5] 직무교육 미이수자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교육실적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서무담당자가 겸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일부 소홀하였으며, 향후 교육 수료 여부 확인, 실적 등록 및 미이수자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훈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은 「수도법」에 따른 법정 전문인력 확보 목적뿐 아니라 상수도 운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 교육훈련비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년 미이수자의 경우 병가에 따른 결원 발생 및 업무량 증가 등의 사정으로 교육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건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한 교육훈련 지원에 있어 대상자 선정, 교육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며, 교

육훈련비를 지원받고도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지원 목적이 적정하게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교육훈련 운영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 ① 향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 수료 여부, 교육실적 등록 여부 및 자격 취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교육훈련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교육훈련비 지원 시 법정 배치기준, 업무수요 및 자격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통보)**
- ③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지급된 교육훈련비의 환수 방안을 강구하시고, 「화성시 상시학습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 등 후속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처분번호	09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징계·주의요구

제 목 ○○ ○○ ○○ ○ ○○○ ○○○○ 및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 ○○ ○○ ○○ ○ ○○○ ○○사업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이 노후·부식 등으로 ○○이 나오는 관내 *년 이상 경과된 ◇◇◇◇을 대상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 및 ■■■■ 등 ○○ 공사비를 지원하는 「○○ ○○ ○○ ○ ○○○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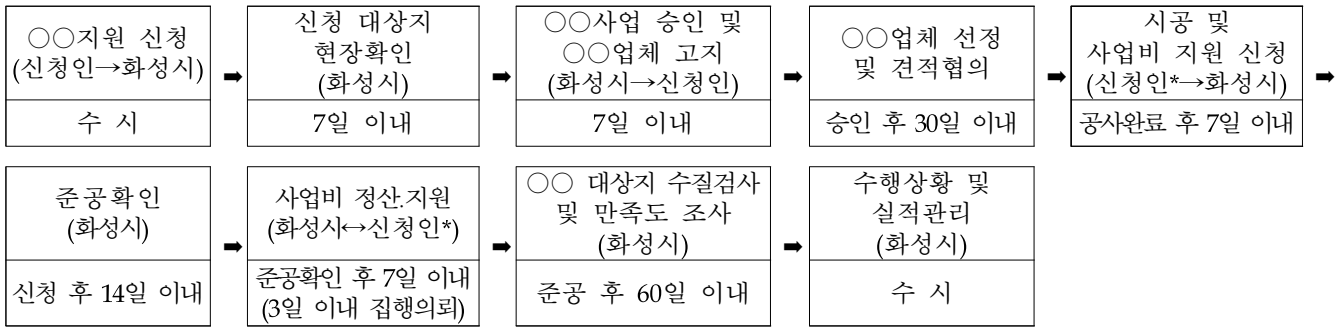
[표 1] 20**~20**년 ○○○○ 지원 현황 및 지원금액 “생략”

2.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등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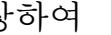
「○○○○○ 업무처리지침(경기도)」에 따른 ○○○○의 세부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와 [그림] 같다.

[그림] ○○○○ 사업추진 절차



*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은 업체 대행 가능

※ ○○○○ 업무처리지침 발췌

「○○○○○ 업무처리지침」 따르면 신청을 접수한 업무처리 담당자는 신청인 정보 · 신청내용 등을 ○○○○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7일 이내 현장에 출장하여 ‘ 상태조사표⁸⁾’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단을 완료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여부 및 사유, ○○비용 지원절차 및 부담비율,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준수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며,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

8)  상태조사표 7. 현재의 부식상황 체크항목: ①○○ 발생여부(발생장소, 발생정도, 발생시간, 발생 후 대처), ②수량 및 수압, ③밸브 개폐 이상 유무

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조 제4항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하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년 맑은물사업소에서 공고한 「○○ ○○ ○○ ○ ○○○ ○○○○ 공고문」(공보 제20**-**호)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을 완료한 ◇◇은 지원제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 사업이 접수되었을 경우 ○○○○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 ○○지원 대상 여부, ○○비용 지원 신청서의 적정성, 보조금 교부 전 확인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승인해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하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표 2]와 같이 ■■■■ *동 *호 등 총 *개소에게 \$원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지 않았고, ☼☼☼☼☼ *동 등 총 *개소가 교부결정 통지 전에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하였다.

[표 2] 20**-20**년 ○○사업 교부결정 미통지 등 부적정 내역 “생략”

특히,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표 3]과 같이 대상지의 급수관 ○○공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 제대로 된 현장확인도 없이 총 *개소를 부적정하게 사업대상으로 승인하여 보조금 총 \$원을 지급하였다.

[표 3] 20**년 현장확인 후 ○○사업 선정 부적정 내역 “생략”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맑은물사업소 ■팀(현 ☆) ◆◆◆은 20**. 00. 00.부터 20**. 00. 00.까지 업무담당자로서 ▲▲▲▲ ♠♠ 및 ◎◎◎◎와 ○○○○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람은 ○○○○ 추진 시 ○○○○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전 확인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승인해야 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가 완료된 ○○○○은 제외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표 2]과 같이 ♣♣♣♣ *동 등 총 *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총 \$원을 교부결정 통지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위 [표 2]의 대상지 총 *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 사전 출장 승인 내역은 [표 4]와 같이 총 *건에 불과하여 다수의 건에 대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특히 [표 3]의 대상지의 경우 실제 현장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업체가 조사한 사항 등에 따라 형식

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확인일을 기재하였다.

[표 4] 담당자 출장내역서(기간: 20.00.~20**. 00.) “생략”**

아울러 위 사람은 [표 5]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문서를 20**. 00. 00. 기
안 후 문서를 상신하였다가 회수하였고, 공사 진행 및 완료 여부 등 확인없이 해당
문서가 약 *일이 경과한 20**. 00. 00. 결재 처리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 통
지 업무를 지연 처리하였다.

[표 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결재 지연 현황 “생략”

그 결과 위 사람은 현장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이미 완료된 공사
에 대하여 ○○○○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결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지연처리하여 ○○○○ 및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3. 민원서류 미접수 및 보조금 지급 지연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
서에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
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 업무처리지침」 따르면 신청인은 승인 후 ○○업체를 직접 선정 하여 3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7일 이내 화성시에 준공검사 및 사업비 지원 신청 을 하여야 하며, 맑은물사업소는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후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 ○○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새올 행정 민원시스템을 통한 전자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 20**년 00월 이전에는 비전자 민원의 경우 온나라시스템(내부 문서관리시스템)으로 접수·등록하고, 준공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또는 보완 요구가 없는 한 최대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표 6]과 같이 20**년에 접수된 민원(○○○○○신청서) *건 전체에 대하여 온나라시스템으로 접수·등록하지 않았으며, 20**년부터 20**년까지 *년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총 사업량 *건 중 *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또는 보완 요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급 기한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연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6] 보조금 지급 지연 내역⁹⁾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및 판단

맑은물사업소에서는 ○○○○ 업무처리 과정에서 신청 접수, 현장확인, 교부결정

9) 세부내역 [별첨2] 확인

통지 등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잦은 담당자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 및 과중한 업무분장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명확히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재정비하고, 업무 지침을 매뉴얼화하여 갑작스런 업무분장 및 인사이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립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당시 조직의 어려운 상황에서 ○○○○ 추진에 있어 비대상자 지급이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과다 지급 등의 부적정 집행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 「○○○○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실제적인 현장확인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공사 완료에 대한 확인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여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2항 관련자 ◆◆◆은 현재는 ■팀으로 ◇◇되어 있으나, 20**년 당시에는 ■팀이 ★★ ★으로 운영되어 초과근무시간이 100시간 이상에 이를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으며, 이에 따라 업체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검토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 완료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서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근무 기간 중 사전 출장 승인 내역이 총 *건에 불과하며 다수의 건에 대해 실제 현장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검토조서에는 현장 확인일을 기재하여 보고하였고,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20**년 ○○○○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향후 「○○ ○○ ○○ ○ ○○○ ○○○○」 추진 시 신청 접수, 현장확인,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 절차를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10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650,00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과다지급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 수질 평가·관리 및 수도 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석수당 기준액(대면)은 1회당 100천 원이며, 2시간 초과 시 50천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회의 시간, 회의 내용, 대면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준액에 맞게 참석수당을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20**. 00. 00.(◆)부터 20**. 00. 00.(■)까지 총 *회에 걸쳐 ‘수돗물평가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수당으로 위원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인당 150천원으로 지급하여, 총 1,650,000원을 과다지급하였다.

[표]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과다지급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과다지급된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50,000원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11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통보·주의요구

제 목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시 불용 수도미터기 상계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만세구청, 병점구청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수선공사(단가계약)” (이하 “교체 공사” 라 한다)를 통해 노후·동파 수도미터기(이하 “불용 수도미터기” 라 한다)를 교체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는 교체 공사를 통해 철거한 불용 수도미터기를 20**년 이전까지는 공사업체로부터 회수하여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한다)을 통해 일반입찰에 부쳐 매각¹⁰⁾하였으나, 20**년 이후부터 공사 설계내역 및 예정가격에 불용 수도미터기를 고재로 반영하여 그 추산가액을 재료비에서 공제하고, 이를 공사 대금 정산 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불용 수도미터기를

10) 2018. 6. 22. 온비드 공고를 통해 불용 수도미터기 13,790개(26,241kg)을 79,130,000원에 매각(1kg 당 3,015원)

공사업체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미터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하며,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미터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이며, 노후 수도미터기¹¹⁾ 또는 동파 수도미터기의 교체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4. “재료비” 라. “재료비의 공제”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되,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 결정된 물품은 감정평가법인등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온비드를 통해 일반입찰에 부쳐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 13에 따르면 구경이 50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기는 사용 후 6년, 그 밖의 수도미터는 사용 후 8년이 검정유효기간이며, 해당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검정을 받아야 함

매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는 교체 공사를 통해 철거된 화성시 소유의 불용 수도미터기는 교체 공사의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량 회수하여 불용 결정 후 감정평가를 거쳐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온비드를 통해 일반입찰에 부쳐 매각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맑은물사업소(▲과)에서 추진한 교체 공사를 통해 철거된 불용 수도미터기 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20**년부터 20**년까지 불용 수도미터기 *개 전량을 회수하지 않고 그 추산가액을 재료비에서 공제하여 공사대금 정산 시 상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1] 불용 수도미터기 현황 “생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맑은물사업소(▲과)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산정한 불용 수도미터기 구경별 고재 단가는 아래 [표 2]와 같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역서상 고재 단가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불용 수도미터기 고재 단가(예정가격)

(단위: 원)

수도미터기 구경(mm)									
15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	\$\$\$	\$\$\$	\$\$\$	\$\$\$	\$\$\$	\$\$\$	\$\$\$	\$\$\$	\$\$\$

※ 맑은물사업소(▲과) 제출자료 재구성(20**~20**년 고재 단가 동일)

[표 3] 불용 수도미터기 고재 단가(실제 계약)

(단위: 원)

연도	수도미터기 구경(mm)									
	15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평균	☆☆☆	☆☆☆	☆☆☆	☆☆☆	☆☆☆	☆☆☆	☆☆☆	☆☆☆	☆☆☆	☆☆☆

※ 맑은물사업소(▲과) 제출자료 재구성(업체 제출 내역서의 고재 단가이며, 전체 업체¹²⁾의 고재 단가 동일함)

또한 맑은물사업소(▲과)에서 설치하는 수도미터기 구경별 재질과 중량(부속품 제거된 황동, 주철만의 중량) 및 재질별 1kg 고재 단가 최근 시세¹³⁾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수도미터기 재질, 중량 및 고재 1kg 당 최근 시세

재질	구경(mm)	중량(kg)	1kg 당 최근 시세(원)
황동	15	0.822	
	20	1.231	
	25	1.531	
	32	1.824	
	40	2.65	
	50	4.233	
주철	80	14.5	
	100	17.798	
	150	31.5	
	200	45.556	

위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검토한 결과, 맑은물사업소(▲과)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불용 수도미터기 회수 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였을 경우 예상

12) 20**년 *개 업체, 20**년 *개 업체, 20**년 *개 업체, 20**년 *개 업체

13) 20**~20**년 불용 수도미터기 감정평가액 선례의 중간값

품목	단위	감정평가액(원)	중간값(원)
황동	kg		
주철	kg		

되는 매각대금은 \$원이나, 고재로 분류하여 공사대금에서 실제 상계처리한 금액은 \$원에 그쳤으며, 결과적으로 그 차액인 \$원 상당의 세외수입 확보 기회가 상실되었다.

[표 5] 불용 수도미터기 매각 시 추가확보 기대 세외수입 현황 “생략”

구경(mm) (개당 중량)	개수(개) [A]	중량(kg) [B]	매각 시		상계 처리		추가확보 기대 세외수입(원) [G=D-F]
			kg당 단가 (원)[C] ¹⁴⁾	기대수입(원) [D=B×C]	개당 단가 (원)[E]	상계금액(원) [F=A×E]	
총계	*	*	-	\$	-	\$	\$
15 (0.822kg)							
20 (1.231kg)							
25 (1.531kg)							
32 (1.824kg)							
40 (2.65kg)							
50 (4.233kg)							
80 (14.5kg)							
100 (17.798kg)							
150 (31.5kg)							
200 (45.556kg)							

※ 15~50mm 재질은 황동, 80~200mm 재질은 주철
 ※ 상계 처리 시 단가는 20**년~20**년 평균 단가로 작성
 ※ 10원 단위 절사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불용 수도미터기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공사대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향

14) 20**~20**년 불용 수도미터기 감정평가액 선례의 중간값

후 교체 공사를 통해 철거되는 불용 수도미터기는 공사업체로부터 전량 회수 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 ① 회수한 불용 수도미터기 보관 장소 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교체 공사로 철거된 불용 수도미터기는 공사업체로부터 전량 회수 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처분번호	12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와 1인수의계약 체결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20**. *. *.에 (주)♠와 “□□□ □□□ □□□ 일원 ♣♣♣ ♣♣♣
♣♣♣ ◆◆◆ ◆◆◆◆공사” (계약금액 \$원) 1인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1인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¹⁵⁾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 계약담당자는 1인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의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는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와 1인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1인수의계약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5) 주요 배제사유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처분번호	13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실시 소홀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¹⁶⁾은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¹⁷⁾를 통하여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 수

1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본문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지칭함

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말함

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¹⁸⁾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함으로써 관련 업체가 이를 열람하고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인 “☞☞☞ ☞☞☞ 일원 ▼▼▼▼ ▼▼▼▼ ☆☆☆ ♠♠♠♠”을 20**. 00. 00. 입찰 공고하기 전, 구매규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 사전공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표]와 같이 총 *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미실시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8)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 물품·용역 계약
진행 시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4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사항 미제재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청사 내에 *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라 한다)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1조에 따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하 “CCTV 운영자” 라 한다)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하 “운영·관리 방침” 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그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 사항을 CCTV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운영·관리 방침에는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인사발령 등으로 CCTV 관리책임자 또는 CCTV 담당실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운영·관리 방침 또한 변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인사발령 등으로 CCTV 관리책임자 또는 CCTV 담당실무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영·관리 방침을 변경하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맑은물사업소(■과)에서 게재한 운영·관리 방침 현황을 확인할 결과,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CCTV 관리책임자(■과장) 또는 CCTV 담당실무자(서무담당) 변경사항을 [표]와 같이 총 *건 미게재하였다.

[표] 운영·관리 방침 변경사항 미게재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인사발령 등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미게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5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조회 미 실시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20**년, 20**년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행정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20**년 *명, 20**년 *명)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화성시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채용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달한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전형과 면접평가를 필수로 하여야 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부서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즉시(면접평가 최소 1주일 전) 채용예정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조회를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에 요청하여 채용예정자의 2년 이상 연속채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즉시(면접평가 최소 1주일 전) 채용예정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조회를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에 요청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년, 20**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행정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에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조회를 요청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의 *년 이상 연속채용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조회 미실시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예정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조회를 미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6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미검토 및 미공고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만세구청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개별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증가하는 오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단위단가를 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일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아래 [표 1]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이를 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 하여야 한다.

[표 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 R(%):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화성시 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화성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신설하는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 + \beta)$$

$$\alpha = (1+R_1) \times \dots \times (1+R_n)$$

▷ R(%):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text{수질오염 부과계수}(\beta) = f(C)$$

$$\beta = f\left(\frac{\text{연계처리 폐수의 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right)$$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 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댓값을 적용할 수 있다.

※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5 재구성

한편 [표 1]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및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등이 포함되므로, 매년 이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재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매년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재산정 검토 후 재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는 [표 2]와 같이 20**년 ~ 20**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재산정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20**년에는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았다.

[표 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재산정 미검토 및 미공고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재산정을 매년 검토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공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7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배제 미실시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구청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 ◇◇◇◇◇ ♠♠♠♠(*차)」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주식회사◇)에게 19일의 과업지연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 ●●●● △△△△, ☆☆☆☆, ◀◀◀◀ ◁◁공사」 등 *개 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를 시행하고 개찰하였으나 1순위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 ⑤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⑥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는 10일 이상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계약상대자 및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개찰 후 포기서를 제출한 1순위 업체에 대하여 3개월 기간의 수의계약 배제 처분 후 그 사실을 본청 및 각 관서에 통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 ◇◇◇◇◇ ♠♠♠ ♠(*차)」 사업에 대하여 *일의 지연배상금(\$원)을 부과하였고, [표 2]와 같이 「♠♠♠♠ ●●●● △△△△, ☆☆☆☆, ◀◀◀◀ ◁◁공사», 「20**년 ◆◆◆◆ ◎◎◎◎ ◁◁ 공사 ♡♡♡♡」 사업에 대하여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개월 기간의 수의계약 배제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생략”

[표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배제를 철저히 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계약 진행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계약 배제 처분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8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추급	재정상 조치금액	29,470원 6,41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소속 직원에 대해 매월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출근일수, 미인식내역, 정정내역)을 확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Ⅶ.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는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아울러,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는 매월 위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휴가 등 개인별 실근무일수를 면밀히 확인하여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 ◎과)에서는 아래 [표1,2,3]과 같이 총 *건 중 *건 29,47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감액하지 않아 과다지급 되었고, *건 64,1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과소지급 되었다.

[표 1] 맑은물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오지급 내역(총괄) “생략”

[표 2] ■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오지급 내역 “생략”

[표 3] ◎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오지급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휴가 등 개인별 실근무일수를 면밀히 확인 후 제출하여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과다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29,470원은 회수, 과소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6,410원은 추가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19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추급	재정상 조치금액	1,533,360원 162,44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과,◎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연가일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연가보상일수를 산출하여 소속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 [표 1]과 같고,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휴직기간¹⁹⁾·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19) 육아휴직기간,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기간, 공무원 부상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

[표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2023년 이전 기준)	재직기간	연가일수(2024년 기준)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6년 이상	21일		

※ 「복무규정」 재구성

그리고 「복무규정」 제7조 제3항은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²⁰⁾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미사용하거나 미보상 연가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표 1]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복무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 라 한다)는 해당 연도 중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 공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비고1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비고2 : 해당 연도 중 병가를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여러 번 사용한 경우 사용한 병가 일수 또는 시간의 합이 15일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로 봄(45일 초과는 2개월)

※ 「복무규정」 및 「예규」 재구성

또한 미사용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20) 병가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은 제외),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교육훈련 기간(1개월 이상인 경우) 등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 ▲과, ◎과)에서는 「복무규정」 및 「예규」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가산일수, 공제일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속 직원의 연가일수를 산정함으로써 연가보상비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 ▲과, ◎과)는 아래 [표 2, 3, 4]와 같이 *명의 연가일수를 과다·과소산정함으로써 연가보상비 1,533,360원이 과다지급되고, 162,440원이 과소지급되었다.

[표 2]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내역(■과) “생략”

[표 3]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내역(▲과) “생략”

[표 4]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내역(◎과) “생략”

관계기관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1,533,360원은 회수, 과소지급된 연가보상비 162,440원은 추가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20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미흡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가족수당 지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

우에는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Ⅲ절 가계보전수당에 따르면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 (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 2회 반기별로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 ◎과)는 20**년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연 2회 가족수당 운영실태를 점검하라는 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표]와 같이 ■과는 *회, ◎과는 *회 가족수당을 미점검 하였다.

[표] 가족수당 운영실태 점검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점검 미이행건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연 2회 반기별로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점검하시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21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특별휴가(육아시간) 사용 규정 미준수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III. 휴가 4.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라. 특별휴가 (5) 육아시간에서는 부서장은 인력 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

시간 휴가를 승인하며,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유연 근무제 사용자 또한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 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 ◎과)에서는 소속 직원이 육아시간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日) 총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때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 ◎과)에서는 [표]와 같이 총 *건에 대해 1일 최소근무시간인 4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육아시간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육아시간 부적정 사용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육아시간 사용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직원들이 특별휴가(육아시간)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해당 건의 특별휴가를 취소하고 연가일수 공제로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22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보증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준공 시에 선금 및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서(또는 각서)를 징구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공사 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또는 보증서)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나(조경공사는 제외),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을 준용하여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한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일반적으로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표]와 같이 “♣♣♣♣♣ 외 *개소 ■■■■ □□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함에도 하자보수 보증금(또는 보증서) 대신 각서로 징구하였다.

[표] 계약 관련 보증서 징구 부적정 내역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하자보증서 징구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보증서(각서) 징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23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하수 사용 관련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하수도법」,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및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하수 사용 관련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에 따르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체납액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되어있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표1]과 같이 20**년에는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실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년 이후로는 추진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표2]와 같이 사용료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건, \$원)에 대해 재산조회 및 압류처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지하수 사용 관련 체납액 정리 현황 “생략”

[표2] 지하수 사용 관련 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체납액 50만원 이상)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분번호	24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신기술 특허공법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기준 부적정 운영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표1]과 같이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표 1]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3절 2-다 2)-마에 따르면 기술보유현황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보면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정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표2], [표3]과 같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기술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 분야와 정성적 평가 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공사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 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공법 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며, 공사에 적용할 공법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5.5.1. 이전 기준)

[표 3]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5.5.1. 이후 기준)

아울러,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 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5.5.1. 이후 개정된 계약집행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르면 정량적 평가항목의 접근성(지역업체 여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 ◁◁◁◁◁ 외 *개소 ☼☼☼ ☆☆공사” 와 “■■■

♠♠♠♠♠ 외 *개소 ♣♣♣공사”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 위원회를 운영(20**. 00.)하였다.

그런데,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4]와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계약집행기준과 달리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반영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반영하였고, 시공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의 실적만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하였다.

[표 4]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점수
계약집행기준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과	경제성	공사비 등수별 편차 적용				10
	재정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경기도) 업체 여부				
		구분	경기도지역	경기도 외 지역	비고	
		점수				
	시공실적	- 시공실적 건수				
		구분	시공건수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6건이상	6건미만~4건이상	4건 미만	
점수						
적용범위:입찰공고일 기준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특허·신기술	신기술 및 특허 보유 유무					

※ 맑은물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 ♣♣♣ 일원 ◇◇ ♠♠♠♠ ■■공사”를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를 운영(20**.00.)하였다.

그런데,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 5]와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접근

성(지역업체 여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점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시공실적에 대한 평가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만으로 실적을 인정하는 등 집행기준과 다르게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하였다.

[표 5]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점수											
계약집행기준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과	공사비	- 공법제안 내역서 공사비 산정부분(평가점수산식 적용)	5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검토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 지역업체 경기도 소재지 여부												
		<table><tr><td>점수</td><td>경기도지역</td><td>그 외 지역</td><td>비고</td></tr><tr><td colspan="4"></td></tr></table>		점수	경기도지역	그 외 지역	비고							
점수	경기도지역	그 외 지역	비고											
	시공실적	- 공법에 대한 시공실적												
		<table><tr><td>점수</td><td>30억이상</td><td>30억미만 ~ 20억이상</td><td>20억미만 ~ 10억이상</td><td>10억미만 ~ 5억이상</td><td>5억미만</td></tr><tr><td colspan="6"></td></tr></table>	점수	30억이상	30억미만 ~ 20억이상	20억미만 ~ 10억이상	10억미만 ~ 5억이상	5억미만						
점수	30억이상	30억미만 ~ 20억이상	20억미만 ~ 10억이상	10억미만 ~ 5억이상	5억미만									
		적용범위: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 맑은물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신기술 특허공법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25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공사 기술사용협약 미체결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 □□□□□ ◇◇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에 따르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 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 ■ ■ ■ ■ ◇◇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다.

위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년 00월에 착수하여 20**년 00월에 준공하였으며, 설계용역 기간 중 절토부 옹벽공사(패널식 옹벽 공법)과 도류벽공사(도류벽 무양카 설치공법)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20**.00.)하였으나, 공사에 대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공사진행 중인 감사일 현재까지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공사 추진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공사 기술사용협약
체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26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우·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 ◆
◆◆◆◆◆ ◆◆공사’ 등 *건을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
하려는 자는 준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의 도급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전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 추진한 “♣♣ ♠♠♠♠♠♠♠ ♢♢공사” 등 *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건축공사 도급자가 설치한 컨테이너 *개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업무수행시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공사감독업무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27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우 ·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 ◆◆◆◆◆◆◆ ◆◆공사’를 [표]와 같이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표] 공사 계약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 감독자, ②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부분의 감리책임자, ③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자, ④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⑤건설안전기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⑥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를 그 자격으로 하였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분리하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하여 도급인, 수급인간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 조치를 조정하여야 하며 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로 각각의 작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착공일 전날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분리 발주된 공사 간의 혼재 작업의 파악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하여,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 추진한 ‘♣♣ ◆◆◆◆◆◆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약 \$억 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50억 원 이상 공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아 건설 현장의 조화로운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부재하고 혼재된 작업환경에서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 업무 시 안전관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2개 이상의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이상인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또는 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28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우·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 ◆◆◆◆◆◆◆ ◆◆공사’를 [표]와 같이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표] 공사 계약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²¹⁾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

21)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획단계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며, 시공단계에는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7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²²⁾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 ◆◆◆◆◆◆ ◆◆공사’의 토목, 전기공사의 각 수급인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착공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인 맑은물사업소는 각 수급인이 제출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

22)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 추진한 ‘♣♣ ♢♢♢♢♢♢♢ ♢♢공사’ 수급인인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의 시공사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수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업무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29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의 기술지도계약 체결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 ■■■ □번지 일원
◀◀◀ ☆☆공사’ 외 2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²³⁾의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 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일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최소화되도록 착공일 전일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아래 [표 1]와 같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인 ‘●●● ■■■ □번지 일원 ◀◀◀ ☆☆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준공하였고, 아래 [표 2]와 같이 ‘◀
◀◀ ○○○ □번지 일원 ◀◀◀ ☆☆공사’ 외 *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각 *일
및 *일을 지연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현황 “생략”

[표 2]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과)는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관계 법령을 준
수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향후 공사업무 수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
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30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 및 전문교육 미이수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우·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배수지 증설, 하수처리시설 설치, 노후관로 및 설비 교체 등 *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²⁴⁾은 업무 수행에 필요

24)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등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함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기술²⁵⁾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목에 따르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은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 관리²⁶⁾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35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 소속 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35시간 이상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③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재안내(화성시 건설과-22398(2022. 10. 5.))」의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문” [참고3]의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Q/A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건설기술인이 아닌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25)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이란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②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③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④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⑤ 건설사업관리, ⑥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試運轉)고 되어 있음

26)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35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 ▲과, ◎과) ○○○○○ ●●● 등 *명은 [표]와 같이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이전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표] 맑은물사업소 건설기술인 기본 및 전문교육 미이수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건설기술인 교육을 조속히 이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소속 건설기술인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31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안전관리 계획 미작성 및 미승인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 □□□□ ▲▲▲▲ ◆◆공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획 수립 대상인 공사를 [표]와 같이 시공 중이거나 준공하였다.

[표] 공사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²⁷⁾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공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및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에는 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②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③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④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⑤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⑥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⑦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때에 건설공사

의 안전관리비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맑은물사업소(☉과)에서 발주한 ‘▷▷ □□□□ ▲▲▲▲ ◆◆공사’와 ‘♠♠◆◆◆◆◆ ◎◎◎◎ ▶▶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과 안전점검 비용 등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시 ▣▣▣▲▲▲▲ ▣▣▣▣사업’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등 현장 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대상공사 발주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32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 발주 부적정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압장 설치 등 3개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²⁸⁾ 또는 단일공사²⁹⁾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29)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과 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³⁰⁾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 ♠♠♠ ■■■ ◁◁공사 등 *개 공사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이고 동일 구조물 공사임에도 분할 발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고, 입찰 대상임에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토목공종과 기계공종을 분리하여 3건의 공사를 나누어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표] 공사 현황 “생략”

30)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과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출수불량 해소를 위한 긴급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목·기계 공종을 분리하여 발주하여 공정관리 및 시공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실무적 판단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며 향후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향후 계약 추진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33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감액	재정상 조치금액	89,408천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장물처리공(관매달기) 미시공 및 설계변경 미이행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정하고 깨끗한 우·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
■■■ ▲▲▲▲ ▲◆◆공사’ 등 *건을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8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후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1. 설계변경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3장 제7절 제1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 ▲▲▲▲ ◆◆공사’ 등 *건

을 시행하면서 공사 준공 전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 및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 ■■■■ ◇◇공사**”의 설계서에 따르면 송배수관 부설 및 접합 등 관로공정에 따른 지장물(기존관 등) 보호를 위하여 “지장물 매달기” 총 ***m를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고, “화성시 **☞☞■■■■■ ◇◇사업**”은 설계서에 “지장물 매달기” 총 *개소가 계획되어 있다.

한편, 상기 현장 시공자는 관로 설치 시 현장여건 및 시공편의 등을 감안하여 [사진1]과 같이 “지장물 매달기” 공정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사진1] 지장물처리공(관매달기) 설치현황

	
지장물 매달기 설치(예시)	☞☞하수처리구역 ■■■■(지장물 매달기 미 실시)

결과적으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설계서 및 계약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시공 명령 및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산정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사의 경우 미시공 되거나 변경 시공된 공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여 [표 2], [표 3]와 같이 총 \$천원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표 2] 지장물처리공(관매달기) 조정 내역(☼☼■■■■■■■■ ▲▲▲▲ ◆◆공사) “생략”

[표 3] 지장물처리공(관매달기) 조정 내역(화성시 ☼☼▲▲▲▲ 교체사업)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당초 설계서 및 계약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재시공 명령 및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산정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현장 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감액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 ▲▲▲▲ ◆◆공사’ 및 ‘화성시 ☼☼▲▲▲▲ 교체사업’ 지장물처리공에 대한 공사비 89,408천원을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설계변경(감액)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34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가설사무소 설치 변경 실정보고 미이행 및 우선시공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만세구청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우·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화성시 ♡♡▲▲▲▲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시공자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확인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정보고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한편, “화성시 ♡♡▲▲▲▲ 정비사업”의 설계서에는 부지를 임대하여 현장 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사무소, 창고, 숙소, 시험실 등을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계획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시 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사용 조립식 건축물이

아닌 기존 사무실 건물(▷▷▷ ■■■ □번지)을 임대하여 설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관련 서류를 지시하여 제출 받아 변경 사유, 공사 편의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 함에도 착공한 이후로 약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이를 지시하지 않았고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진행하여 공사비의 증감액 등이 비교 검토되지 않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2] 조립식 → 임대사무실 변경 공사비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당초 설계에 반영된 조립식가설사무소가 아닌 건물 내 사무실을 임대하여 현장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검토보고, 설계변경 등이 진행되지 못해 공사비 절감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준공 전 사용기간 및 사용금액 등에 대해 재확인을 통해 사업비가 과다 산정되지 않고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조립식가설사무소를 임대사무실로 변경하는 실정보고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시공사 및 감리단에 실정보고를 승인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35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주의 6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45,342천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공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 처리를 위해 ‘   □번지 일원 
 공사’ 등 *건을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³¹⁾
 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

3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62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때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 □번지 일원 ▮▮▮▮▮▮▮▮◆◆공사” 등 *건을 시행하면서 준공 전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 및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의 공사 준공 서류를 확인한 결과 “☼☼☼ □번지 일원 ▮▮▮▮▮▮▮▮◆◆공사”에서는 조립식간이흙막이공을 ㄷ자형임시흙막이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PE Free웬스를 미설치하였으며, “☼☼☼ ◆◆◆ □번지 일원 ▮▮▮▮▮▮▮ ◆◆공사”에서도 PE Free웬스를 미설치하였다. 또한 “▣▣▣ ○○○ 일원 ▮▮▮▮▮▮▮ ◆◆공사” 등 *건에서는 기층포설 및 다짐 횟수를 1회씩 미달되게 시공(3회→2회)하였

고, “▷▷▷ ▣▣▣▣ □번지 일원 ▣▣▣▣ ♣♣공사”에서는 기층포설 및 다짐 횃수를 1회 미달 시공(2회→1회) 및 유로폼과 비닐깔기를 미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시공자가 당초 설계서 및 계약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경 시공된 공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비 45,342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2] 공사비 정산 미이행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일부 공사가 설계 및 계약 내역과 달리 시공되었음에도 시정 요구 및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아 공사비 45,342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 □번지 일원 ▣▣▣▣▣▣▣▣▣▣◆◆공사’ 등 *개 건설사업장에서 준공검사 등 소홀로 부당지급한 공사비 45,342천 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36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의 GIS DB 구축 및 정확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추진 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르면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하며,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며,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인 경우업체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실적에 따른 경쟁제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하고,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발주기관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계약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경우에는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 ▲▲▲▲▲ ◇◇공사 GIS DB 구축용역”(추정가격 \$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제안서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표 1]과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과 다르게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거, 내부검토자료 부재) 제안서 평가항목에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최종 준공된 하수가 포함된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사업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함

으로써 신규업체의 진입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

[표 1] 제안서 정량평가 항목 “생략”

또한, 맑은물사업소(☉과)에서는 [표 2]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과)는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37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분기별합동점검 발주청 미참석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우·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 ☆☆☆ ★★★★★
설치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계약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

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인 맑은물사업소의 공사관리관은 담당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분기별로 담당 건설공사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에서 추진한 ‘☉☉☉ ☆☆☆ ★★★★★설치사업’의 점검현황을 살펴보면 공사 착공 후 감사일 현재까지 월별,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아래 [표 2]와 같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번의 합동점검에 참석하지 않고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표 2] 분기별 합동 점검 시 발주처 참석 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 공사감독업무 수행시 분기별 합동점검에
발주청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38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관리관 준공검사 입회확인서 미작성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우·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화성♣♣♣♣♣ ♡♡사업(◇◇◇ ㉠㉠㉠)’ 외 *건을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2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식]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 (일부발체)

사업부서의 장

공사명 :

점검항목	확인여부		비고
	확인	미확인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을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시공이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을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해서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 확인			
·공사 시공 중에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 채취장 포함)을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을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 지 여부를 확인			

20 . . .

공사관리관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맑은물사업소(▲과,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준공검사 입회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2조 6항에 따른 준공검사자가 관계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서식]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준공검사 현황 “생략”

관계기관 의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공사업무 수행 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 연찬, 법령 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39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맑은물사업소 (■과,▲과, ◎과)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미 실시 및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미발급

소 관 기 관 맑은물사업소

조 치 기 관 맑은물사업소

내 용

1. 업무 개요

맑은물사업소는 화성시의 원활한 급수공급과 하수처리 등을 위하여 보수·보강·개선·교체·신설 등의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후에는 하자검사조서(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를 작성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한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 내용, 처리사항 등을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유지토록 하고, 기간만료 전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의 하자검사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를 *건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최종 하자검사도 *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 후 발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도 발급되지 않는 등 하자검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하자검사 실시현황 및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현황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과에서 시행한 ♠♠♠ □□□□ □□□□ ▶▶▶▶사업 등

*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검사 업무는 통상적으로 상반기 및 하반기 검사요청에 따라 검사 수행하나 일부사업이 검사요청목록에 누락되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약부서에서 검사요청 목록을 작성하면서 하자검사 대상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사업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맑은물사업소는 하자보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하자검사 관리대장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맑은물사업소장은 시설공사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IV.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자문의견

○ 참여일시: (1차) 2026. 3. 16.(월) / (2차) 2026. 3. 20.(금)

○ 참 여 자: 일반시민감사관 ☆☆☆, ♣♣♣

○ 참여의견

의견 1	'○○ ○ ○○○ ○○사업' 서류 관리 부적정
내용	▶ 지방보조금사업 문서 관리 철저 요청 - 준공검사원에 담당자 날인 누락 확인 - 준공검사서 내 날짜 오기 다수 발견 - 동일 사업 관련 서류철 중복 보관으로 문서 관리 체계 미흡 - 향후 문서 작성 및 보관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함
의견 2	사업자 선정 절차 위반
내용	▶ 「○○○○○ 지원조례」 관련, - 제8조(사업시행)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 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 1개 업체로 사업이 집중되고 있음 - 이에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비교 견적 절차 이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 - 향후 조례에 규정한 공정한 경쟁 원칙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의무 준수를 요청함
의견 3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
내용	▶ 수돗물평가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요청 -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단체에게 추천받은 인사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 일회성이 아닌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공개성·공정성·참여성 원칙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제한 관행적 행정 처리로 판단됨 -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요청함

V. 모범사례

제목: 직원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추진 및 청사시설 안전점검 실시

□ 개 요

- 목 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분야 의무 이행이 강화됨에 따라 직원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역량 강화
- 사 업 명: 직원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 사업대상: 맑은물사업소 소속직원 48명
- 사 업 비: 430천원

□ 추진실적

- 직원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자체 추진
 - 교육일시
 - 1차: (1기) 2025.7.23.(수) 15~17시, (2기) 2025.7.23.(수) 15~17시
 - 2차: (1기) 2025.9.10.(수) 13~14시, (2기) 2025.9.11.(목) 9~11시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미
 - 화성시 도급·용역·위탁사업 및 업무처리 및 법적 이행
 - 소규모 건설공사 관리 대상여부 및 관리대상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 산재사고 유형 및 예방방법 공유 등
- 청사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점검일시: 2025.9.1.(월), 2025.10.29.(수), 2026.1.16.(월), 2026.2.24.(화)
 - 점 검 자: 소장,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
 - 점검내용: 청사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근로자 의견 청취

□ 추진성과

-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안전역량 강화
- 청사시설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 조치

제목 : 중단없는 논스톱 급수공사 시행

□ 개 요

-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로 준공 지연 및 금융비용 부담 등 시민 불편 최소화
- 시민 중심 맞춤형 적극 행정 서비스로 시민의 재산 보호

□ 검토 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동절기 기간 축소 및 동절기 평균 기온 상승
- 겨울철에도 신축중인 건축 현장 및 급수가 필요한 수용가 존재
- 급수공사 특성 상 공사기간이 짧고 단시간에 안정적으로 설치 가능
- 일률단편적인 동절기 신청 제한 및 시행 중지로 민원인 불편 가중
 - ※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예 따른 급수공사 신청시기 도래로 인한 건축물 미준공에 따른 사용 및 금융 비용부담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하수 관정 개발로 건축물 준공하고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 해제 후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시간 및 비용 낭비 초래 상황임

□ 동절기 급수공사 신청 접수 및 시행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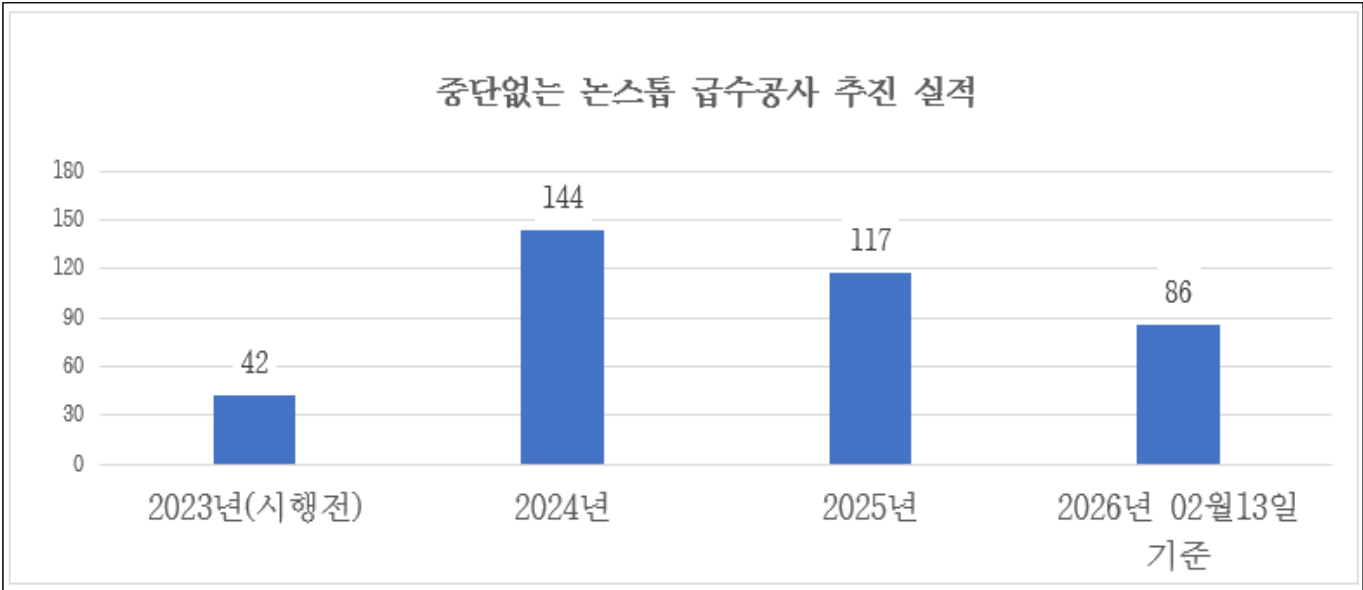
- 매년 반복적으로 동절기 기간에는 신청을 제한하였으나, 급수공사를 위한 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와 급수공사 승인 및 시행
- 권역별 급수공사 신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처리 소홀 해소 및 해빙기 이후 민원 처리 가중 해결
- 동절기 기간중에도 급수공사 신청접수를 유지하여 연속성 있는 민원 처리로 시민 편익 증진
- 일률단편적인 동절기 공사시행 중지가 아닌 기온 상황에 맞게 시행
- 기온 상황과 상관없는 급수공사(수전분리)는 즉시 시행
- 포장공이 포함되는 급수공사는 일 평균 5℃ 이상 시 시행
 - ※ 단, 도로점용(굴착)이 필요한 구간은 동절기 이후 시행 하는 등 탄력 적용
- 겨울철 공사시행구간 공사감독 철저 및 점검시행

□ 추진 현황 및 실적

- 2023. 11. : 급수공사 신청 접수 및 시행 방안 검토 보고
- 2024. 01. ~ 2024. 02.: 2024년 중단없는 급수공사 시행
- 2025. 01. ~ 2025. 02.: 2025년 중단없는 급수공사 시행
- 2026. 01. ~ 2026. 02.: 2026년 중단없는 급수공사 시행

□ 추진 실적

- 중단없는 논스톱 급수공사 시행 이후 매년 100건이상 민원 처리 완료
- 중단없는 논스톱 급수공사로 인한 급수공사 민원 만족도 증가



분 류	중단없는 논스톱 급수공사 추진 실적				비 고
	2023년 (시행전)	2024년	2025년	2026년	
민원 처리 (승인)건수	42	144	117	86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1월 ~ 2월

제목 : 실무협의를 통한 오산시 하수 위탁처리 갈등 해소 및 안정적 하수처리 체계 유지

□ 개요

- 오산 제2하수처리장은 화성특례시와 오산시가 공동 설치한 시설로, 시설 용량은 64,000톤/일이며 이 중 화성특례시 협약물량은 36,684톤/일로 동탄 7·8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위탁 처리하고 있음
- 최근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과 위탁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양 시 간 하수 위탁처리 관련 협의 필요성 증대

□ 추진 배경

- 오산시는 오산3하수처리장 증설 지연(시설규모 17,500톤/일, 2030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라 하수처리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관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화성특례시 위탁물량 조정을 통한 처리용량 확보 필요성 제기
- 또한 동탄지역 여름철 하수 유입량 증가와 동탄2수질복원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량 감소로 협약물량(36,684톤/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오산시는 동탄 하수 위탁처리 협약 종료 요청과 유량조절 계획을 통보하였고, 위탁사용료 산정 시 총괄원가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과소산정 부과차액 1,167억 원 주장

□ 추진 경과

- 2025. 2. : 오산시, 2028년 동탄 하수 위탁 종료 요청
- 2025. 5. : 화성시 위탁하수량 초과에 따른 유량조절 계획 통보
- 2025. 7. : 한강유역환경청 회의 개최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오산시의 일방적 하수 차단 불가 확인
- 2025. 9. : 부단체장 간 면담 실시
 - 위탁물량 조정, 처리요금 분쟁, 향후 자체처리 방안 협의
- 2025. 9. : 동탄2 수질복원센터 압송관로 신설 계획 수립
- 2025. 10. ~ 2026. 4. : 위탁물량 및 처리요금 관련 지속 협의 및 공문 회신

□ 실무협의 주요성과

- 위탁물량 조정과 요금 관련 분쟁을 구분하여 단계적 협의체계 마련
- 동탄2하수처리장 증설 전 초과 위탁물량에 대해 오산시 처리 가능 범위 내 협조체계 유지
- 향후 화성금곡도시개발지구 하수처리장 건립 시 협약물량 전량 자체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 방향 설정
- 위탁하수 처리요금 및 과거 부과차액은 경기도 재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협의
- 수문 설치 및 유량계 재설치 관련 양 시 협의 완료

□ 기대효과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안정적 하수처리 체계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시설개선과 연계한 장기적 자체 처리 기반 마련
- 광역행정 갈등의 협의 중심 해결모델 제시